

성철사상연구원 윤리 규정

연구윤리 강령

성철사상연구원은 현대 한국불교의 대선지식으로 평가받는 퇴옹성철 큰스님의 수행과 사상을 연구하여 선풍진작을 도모하고, 불교학의 발전과 불교중흥을 위해 창립된 연구기관이다. 본 연구원은 이와 같은 개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방향을 지향한다.

첫째, 성철큰스님의 삶과 수행에 대해 연구하고 선사의 본래면목을 바르게 조명한다.

둘째, 성철 큰스님의 정신에 계승하여 돈오돈수의 사상을 연구하고, 조사가품의 진작과 간화선 수행에 대해 학술적으로 연찬한다.

셋째, 불교학과 인문학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성철사상연구원은 학문 연구의 활성화와 연구윤리 정착을 위하여 연구 활동에 참여하는 구성원에게 다음과 같은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도록 한다.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성철사상연구원(이하 '본원'라 한다)의 학술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본원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원과 불교학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연구원의 임원과 구성원, 편집위원 등 연구원의 학술활동과 관련된 모든 구성원들은 연구윤리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학자적 양심 준수의 의무)

연구원 회원은 교육 및 연구에 관련된 제반 활동에 있어 학자적 양심과 윤리에 충실하여야 한다.

제4조(지적재산권 보호의 의무)

연구원의 구성원과 관련된 학자는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타인의 연구 내용이나 논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

이나 저술에 제시해서는 안 된다.

제5조(청렴의 의무)

연구원의 구성원과 관련 학자들은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추구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표절에 관한 규정)

1. 본 연구원은 고의적으로나 또는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타인의 지적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표절로 정의한다.
2. 본 연구원은 다음의 두 가지 형태를 표절의 대표적 행위로 규정한다.
 - ①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지, 고유용어, 데이터 및 이에 준하는 지적산물 등에 대해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활용한 경우.
 - ② 출처는 밝혔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의 많은 부분과 아이디어 등을 자신의 주장인 것처럼 원문 그대로 옮긴 경우.

제7조(윤리규정 위반 시의 제재)

표절이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 편집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절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1. 해당 학술지의 논문목록에서 삭제
2. 해당 논문투고자의 일정기간 논문투고 금지(최소 3년 이상)
3. 연구비가 지급되었을 경우 연구비의 회수
4.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표절 내용의 공시
5. 표절가담자의 소속기관에 표절사실에 대한 통보
6. 한국학연구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사항 통보

제8조(기타: 중복게재 금지)

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본 연구원의 학회지에 중복되어 게재되거나 발표된 것으로 판정이 될 경우에도 표절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9조(윤리규정 이행의 관리, 감독)

본 연구원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에 표절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한 표절여부의 확정과 제재내용의 확정은 일차적으로 편집위원회가 담당하며, 본 학회 윤리규정 위반에 관한 제소가 있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위

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 한다.

제10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편집위원장이 위촉하는 3인의 학자와 성철사상연구원 원장과 연학실장 등 최소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필요시 편집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자격과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연구윤리위원회 기능)

1. 제소된 회원의 윤리규정 위반 여부 심의 및 필요한 규칙 제정
2.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심의·의결 처리
3. 제소된 사안 및 회원에 대한 제명, 자격정지, 공개사과 등 징계의 종류와 공표

제12조(윤리규정 위반의 제소)

1. 연구원의 구성원은 관련 학자들의 윤리규정 위반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구체적인 사실을 근거로 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제보할 수 있다.
2. 편집위원이나 심사위원 등이 투고논문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는 윤리규정 위반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보한다.
3. 연구자의 논문이 게재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라도 문제성이 발견 될 때에는 상응한 조치를 한다.

제13조(피제소자의 소명기회와 비밀 보장)

1. 윤리규정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에 관하여서는 충분한 소명 기회 부여를 원칙으로 한다.
2. 윤리위원회는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당사자의 신원과 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제14조(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

연구윤리 규정의 개정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제15조(기타)

이상의 규정에 명기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부칙

본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은 성철사상연구원의 임원진 회의를 통해 2020년 2월 28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